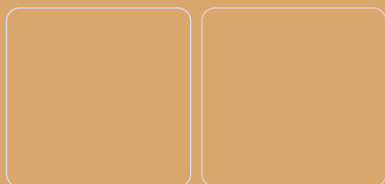


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 서문희 · 이혜민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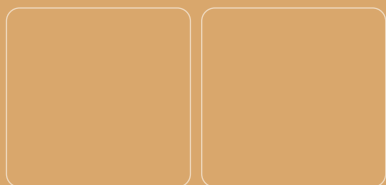


호주의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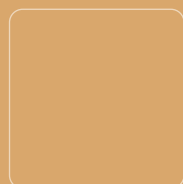
| 서문희 · 이해민

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 서문희 · 이해민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인적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인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공적투자가 여타 시기보다 가장 투자효과가 높다는 주요 선진국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기인하여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간행 되고 있는 세계육아정책동향은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2007년도 호주와 영국, 2008년도 미국과 캐나다, 2009년도 핀란드와 프랑스, 2010년도에는 뉴질랜드와 독일, 2011년에는 일본과 대만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정책 동향을 꾸준히 발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2007년도에 발간된 호주편을 최신 자료와 정책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분석하여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계육아정책 동향시리즈가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1장	호주의 일반적 특성 1. 개요 • 4 2. 인구학적 특성 • 5 3. 육아 및 가족 지원 제도 • 7
2장	보육 관련 법 · 제도 1. 관련법 • 10 2. 행정 및 전달체계의 개요 • 14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 16 4. 주요 사업 및 예산 • 18
3장	보육·유아교육 제공 및 이용 1. 유아교육 • 20 2. 영유아교육 프레임: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 형성 • 25 3. 보육 서비스 • 28 4. 보육인력 • 35
4장	영유아 보육·교육 품질관리 1.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 • 43 2.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 47
5장	호주의 보육·교육 비용 지원 1. 지원 개요 • 61 2. 지원 제도 유형 • 63 3. 부모부담 완화 효과 • 73
6장	요약 및 맺는 말 • • 75
참고문헌	• • 77

호주의 일반적 특성

1. 개요

호주는 국토면적이 774만 평방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다. 호주는 1901년 연방이 된 이래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로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지방정부로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의 6개 주와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Northern Territory의 2개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국민은 에버리진(Aborigine) 및 토레스(Torres) 해협 섬주민이 원주민이지만, 전후 60년간의 이민수용계획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65만명의 난민을 비롯해 650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호주로 이주해 왔고, 따라서 호주의 인구는 기존의 7백만명에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호주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 중 약 1/5이 제2외국어를 구사한다. 이러한 호주의 이민자들은 유용한 언어 등 여타의 역량을 갖춰 오늘날의 세계적 경제 환경에 맞는 노동자원으로 아시아와 서구의 두 가지 환경에서도 능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어 호주 성장에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국민 복지는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 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존과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국민 1인당 GDP는 2012년 67,000달러¹⁾ 정도이다.

2. 인구학적 특성

2013년 3월 31일 호주의 인구(ERP)는 23,032,700명이다. 2012년 3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이후 114,800명, 397,400명이 증가되었다. 호주 인구는 2013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 동안 1.8%가 증가된 것으로 자연 증가와 해외 이주가 각각 40%와 60%를 기여했다.

1) 이하 언급되는 단위는 호주달러(ADU)임.

2012년 6월 호주 인구의 평균 연령은 37.3세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4세이고, 여자의 평균 연령은 38.2세였다. 15세 미만의 총 아동 수는 4,290,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한다.

인구의 대부분은 대륙의 남동지방, 동쪽 해안, 남서지방의 도시화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륙의 약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인구의 84%가 살고 있다.

출산 수준은 1948~1961년의 베이비붐 세대에 전체 출산률은 3.6명에 달했으나 점차 떨어져 지난 1998년은 최저치인 1.74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하로 낮아지지는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률은 1.8~1.9명이다.

〈표 1〉 호주의 출산율과 인구증가율

						단위: %
구분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합계출산률	1.807	1.883	1.931	1.933	1.857	1.870
인구증가율	1.49	1.54	1.75	1.84	1.32	1.17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3), Celebrating the International Year of Statistics 2013.

2013년 현재, 여성의 취업률은 58.6%로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취업자 중 53.4%가 종일제 근로자이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46.6%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있다.

3. 육아 및 가족 지원 제도

호주는 가족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에 많은 투자를 해 온 국가가 아니다. 여성취업률도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공공 인프라의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고 다수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분리된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보육을 중요한 사회정책 대상의 하나로 인식하여 질 관리 및 비용 지원 체계를 갖추어 왔으며, 각종 수당을 통하여 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에 비하여 유급 부모휴가 제도의 도입은 2011년에나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부모보조금과 취업한 부모를 대상으로 세액 환급 형태의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국가 품질 기준과 평가인증 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해 왔다. 최근에 새로운 품질관리 체계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이외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하여 조세와 연계한 급여제도(Family Tax Benefit)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며,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A형은 자녀양육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다른 소득보조 급여

액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며, 수령액은 가족의 연간 소득, 18세 미만 자녀 수와 18~25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B형은 16세 이하(학생은 18세까지)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부 중 한 사람만 취업하는 경우가 급여 대상이다. 한부모는 급여의 최대액을 적용받지만, 양부모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아동이 5세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으로 나누어 상한선을 달리하여 급여기준액이 결정된다.

부모 수당(Parenting Payment)은 8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와 6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양부모가 대상이며, 자산조사에 의하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한부모인 경우 2주에 약 700달러 정도, 양부모는 45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베이비보너스 제도를 실시하여 소득 제한을 두어 출산한 아동이나 출생 26주 이전에 돌보는 아동에 현금을 공제해 왔다. 2013년 연 소득 75,000달러 이하로 첫 자녀는 5,000달러, 그 이외는 3,0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 제도는 폐지된다.

2011년 이전에 호주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였는데, 2011년에야 처음으로 유급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급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1994년부터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기간은 52주 정도였다. 그러나 유급 출산 휴가 제도의 경우 공공 부분이나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정도였다. 출산 휴가의 경우 직장의 동의하에 단지 출산한 여성의 17~38%만이 휴가를 받았으며, 유급 출산휴가는 평균 8주 정도였다.

2011년에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 부모휴가 제도 도입은 획기적 조치

였다. 이는 아동 출생과 아동 입양에 적용되며 전일제는 물론 시간제, 일시 및 계절 근로자, 계약직 및 자영업자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는 부모휴가 수당과 아버지 및 배우자 수당 두 가지이다. 부모휴가 수당(Parental Leave Pay)은 주로 출산모에게 국가 최저 생계비 수준인 세전 주당 622달러를 18주 동안 지급한다. 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데, 고용주가 없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센터링크(Centerlink)에서 지급한다. 아버지 및 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은 2013년 1월부터 적용된 제도로, 일하는 아버지나 배우자에게 국가 최저 생계비 수준인 세전 주당 622달러를 2주 동안 지급하여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육 관련 법·제도

1. 관련법

가. 1972년 아동보육법(Child Care Act, 1972)

1972년 제정된 아동보육법은 주로 공공보육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 이 법에서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은 아동보육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장소로 규정하고, 이용 아동은 다수가 취학 전 아동으로 평일 8시간, 주 4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육시설은 비영리 기업, 지방정부, 비영리 조합(Trustee) 등이 설치한 비영리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

원에 관한 내용이다. 신규로 공공 비영리 보육시설 설치와 장비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Capital Grant), 또한 순환 보조금(Recurrent Grant) 제도를 두어서 신규 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개원 이전까지 6주간 개원 준비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이외 비밀유지 조항을 두어서 공개가 허용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불법 접근 및 유출에 대한 벌칙 등을 명시하고 있고, 보육관련 연구 및 보육시설 개발 관련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 자문기관으로 보육 기준위원회(Child Care Standard Committee)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필요시 장관이 하위법령인 지침(Guideline)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0년 국가 교육과 보호 서비스 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

2010년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운영자 및 서비스 인가, 서비스 운영 내용과 평가 등 아동 교육과 보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영유아 보육 교육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³⁾를 확립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 보호, 아동안전,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고, 참여 아동의 교육과 발달 성과를 증진하며, 보호와 교육 질적 수준의 지속적 개선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

2) 1997년부터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제도는 없어지고, 부모 보조금으로 일원화됨.

3) National Quality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축약하여 National Quality Framework로 기술함.

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적 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통합과 공동책임을 확립하고, 질적 수준에 대한 공적 지식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확립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법의 본문은 총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2~6장이다. 제2장은 하나 이상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자 인가에 관한 것으로 인가 신청, 적합성 평가, 인가 변경, 중지 및 취소, 유고 시 대체 방법 등을 담고 있고, 제3장은 보육·교육 서비스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 서비스와 가정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기관 서비스에는 종일제보육, 학교 밖 보육 및 유치원이 포함된다. 제4장은 원장에 관한 규정이다. 원장 자격을 소지한 자만 서비스 제공기관에 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5장은 보육·교육 서비스 평가와 등급에 관련된 규정으로, 1990년대 초부터 시행해 온 평가인증 제도를 평가제도로 변경하고 그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시켰다. 제6장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는 모니터링, 위원회, 국가 기관(Quality Authority, Regulatory Authority), 정보, 기록, 프라이버시,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국가 교육과 보호 서비스 규칙(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Regulation, 2011)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각종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각종 규정 미준수 시 정해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사항에 따라 1,000달러, 2,000달러임.

다.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A 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 Act, 1999)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법은 가족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5장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료 지원인 보육급여와 보육환급, 가족세액공제, 출생아에 지급하는 아기 보너스, 모성예방접종 등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인간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소관이다.⁵⁾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 하위법령은 대체로 결정(Determination)으로 고시되는데 대부분이 보육급여 지원 대상이나 시간 결정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하면, 먼저 2006년 근로 및 근로 관련 요건 결정⁶⁾에서는 보육료 지원 시간과 관련한 14가지 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2006년 보육급여 요구 조건 활동 결정에 의해 근로활동으로 간주하는 9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⁷⁾ 9개 조건은 개업 준비 상태, 구직활동, 경험·기술연마·취업기회가 기대되는 무급 자원 근로, 12개월 이내 부모 휴가, 연가, 병가, 장기휴가, 유급휴가, 자영업자로 질병이나 연가·장기휴가·부모휴가로 간주되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근로

5) 육아휴직, 노인, 장애인 등 인간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소관 업무임.

6) A 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Child Care Benefit-Recognised Work or Work Related Commitments) Determination 2006

7) A New Tax System(Family Assistance)(Child Care Benefit-Activities counting toward Activity Requirement) Determination 2006

를 제안 받거나 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 기관 등록자는 1주일 간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한편으로 1999년 신조세체계법(가족지원)은 집행을 위한 행정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족 세액공제, 아기보너스, 출산 면역수당, 보육급여, 보육조세 환급에 대한 지불, 과지급과 청산, 선 지급 및 정산, 결정에 대한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 수집, 비밀유지, 거짓진술 등을 규정하고, 불법 지원에 대한 고용주나 서비스 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와 제공자와 등록 보육자의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근거하여 결정, 규칙으로 고시되는데, 그 내용은 벌칙에 대한 이자, 등록 중단시 보육급여, 관련 서류에 관련 지침 등이다.

2. 행정 및 전달체계의 개요

호주의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체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2013년 9월 13일자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소관 부처는 일원화되었다. 그 과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에서 유치원은 초기 아동발달 이론이나 유럽에서의 유치원 설치 운동의 영향으로 일찍이 1890년대부터 설치되어 주로 아동의 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주로 일하는 부

모의 자녀 보호와 그들의 자녀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중앙정부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Family,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가 보육 주무 부처이고, 교육과학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유아교육 담당 부처였다. 그러다가 2009년에도 학교, 고용 및 노사 관계부를 만들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부서 아래 두었고, 2013년에 다시 이 부서를 교육부와 고용부로 나누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 산하에 두었다.

전달체계로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FAO)가 그 파트너 기구들로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된 전달기구인 센터링크(Centerlink),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의료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와 함께 작동한다. 전국 550개 가족지원사무소는 조세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육급여, 의료보험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 지급, 자원자격 상담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특히 센터링크와는 협력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링크는 인간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소속 법적 기구로 1997년 연방 서비스 전달 기구 법(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997)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더불어 과거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FaHCSIA)는 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로 변경하여 소득지원, 주택정책, 지역 사회 지원, 장애인 지원, 여성, 아동 및 가족지원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호주의 영유아 관련 정책은 보육 부분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주 정부는 학교, 예비학교(유치원) 및 일부 일시보육센터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또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인가, 재정지원, 연방 및 지방정부 공동사업계획 수립, 연방정부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아동사업 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기준 시행 및 모니터링, 보육 관련 보조금 지급(일부 주) 등도 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보육 시설의 인가⁸⁾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는데, 종일제보육센터에 대하여 모든 주정부가 설치 기준 및 이행 여부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호주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간의 양자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에는 호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와 각 지역 정부는 유아교육에 관한 양자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유아교육에서 목표, 결과, 진행 방법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각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작업과 전략이 있다. 이는 2013년 모든 아동이 유치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정규 학교 이전 연도에 12개월 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4년제 대학 자격을 갖춘 유아 교사를 주 15시간, 연 40주 교육을 통하여 배치하며, 다양성을

통하여 부모 요구를 충족하고 이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용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에 호주정부위원회를 통하여 연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에 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최근 2013년 6월에는 유아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협정⁸⁾을 맺었다. 이는 취약하고 불우한 아동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2014년 말까지 질 좋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걸쳐 지원, 의료 및 교육에의 접근을 통하여 가족과 지역 사회에 적극 관여하는 방식으로 생활과 학습을 전달하고, 부모의 근로 욕구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국가 공동체에서 6억 5,6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를 지방 정부에 2014년 말까지 18개월 동안 할당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연방정부는 지방정부가 보육·교육에의 보편적 접근을 구현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며 추진 중인 인가보육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원주민(외딴 지역 포함) 아동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협정을 맺은 각 지방 정부도 협정 내용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동안 유치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보육·교육 이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원주민 사회에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특정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8) 호주에서는 인가를 3년에 한 번씩 갱신함.

9)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4. 주요 사업 및 예산

호주 연방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사업은 보육시스템 지원, 보육비용 지원, 유아교육으로 구분된다.

보육시스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평가를 포함한 질적 수준 제고 사업, 장애아동과 같이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 통합서비스, 보육 관련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 지역 사회 지원 사업 취업 및 훈련 보육 보조금(Jobs, Education and Training(JET) Child Care Fee Assistance)이 포함된다. 보육비용 지원은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와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CCR)으로 구성된다. 이외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일부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항목별 소요예산은 <표 2>와 같이, 2013~2014년에 55억 5,760만 달러 규모인데, 점차 증가하여 2016~2017년에는 64억 9,00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요재정도 현재는 보육급여 예산이 가장 많으나 점차 보육환급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연방정부 영유아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육에 집중되어 있고 유아교육 재정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문 비용 및 육아휴직 비용을 포함한 호주 정부가 영유아 보육·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0.45% 정도인데(OECD, 2006), 최근에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연방정부 영유아 부분 예산 계획

단위: 1,000 ADU

구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계	5,249,828	5,557,599	5,854,319	6,169,639	6,490,109
보육시스템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393,922	343,632	369,707	361,513	369,345
취업 교육 훈련 지원대상보육(JETCCFA)	110,900	82,941	110,147	135,450	139,151
소계	504,822	426,573	479,854	496,963	508,496
보육비용 지원					
보육급여(CCB)	2,529,842	2,529,842	2,529,842	2,529,842	2,529,842
보육환급(CCR)	2,131,163	2,131,163	2,131,163	2,131,163	2,131,163
소계	4,661,005	5,048,234	5,372,965	5,672,676	5,981,613
유아교육					
보편적 유아교육 접근	3,000	3,000	1,500	-	-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2012), DEEWR Budget Statements-outcomes and performance.

이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예산 투자 계획과 더불어 정책 목표로 부모의 보육·유아교육 비용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8~12%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아교육은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와의 협정을 통하여 유치원 등록률, 원주민 유치원 등록률, 벽지 아동 유치원 등록률 및 주당 15시간 이상 등록 비율을 모두 95%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유아교육 제공 및 이용

1. 유아교육

가. 유아교육 운영

1) 중앙정부 역할의 최소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호주에서는 취학전 1년 인 만 4세아 유치원 교육은 대개 무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아니다.

호주에서 유아교육 실시 주체는 유치원과 종일제보육에서의 유치원 프로그램의 제공 사업자로 구성된다. 유치원 이외에 종일제 보육시설(Long Day Care; LDC)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위치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체로 학위를 가진 유치원 교사가 실시한다. 유치원

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 시간, 프로그램, 아동연령 등이 다양하다.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호주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7,594개소이다. 2012년 기준으로 56.7%인 4,307개소는 독립 실행형 또는 학교의 일환으로서의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이고 43.3%인 3,287개소는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이다. 유치원은 정부 기관이 44%인 1,885개소이고, 비정부기관이 56%를 차지한다. 비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지역학교가 다수를 차지한다(표 3 참조).

유치원에서도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보육비용은 지원한다.

〈표 3〉 지역별 유치원 개소 수: 2012

구분	단위: 개소								
	NSW	Vic.	QLD	SA	WA	Tas.	NT	ACT	전체
유치원	875	1,164	561	384	881	222	141	79	4,307
정부 기관	157	232	135	355	635	160	132	79	1,885
비정부 기관	718	932	426	29	246	62	9	-	2,422
지역 학교	693	837	394	7	-	-	-	-	1,931
영리	-	11	12	-	-	-	-	-	23
독립 학교	22	84	17	14	119	31	5	-	292
카톨릭 학교	3	-	3	8	127	31	4	-	176
종일제보육	1,253	843	975	111	46	10	7	42	3,287
총계	2,128	2,007	1,536	495	927	232	148	121	7,594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Preschool Education, Australia, 2012.

2012년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4, 5세 아동은 273,297명이다. 17.5%는 5세이고, 82.5%는 4세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이다. 아동을 기준으로 62.8%가 유치원 프로그램, 37.2%가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치원 참여 아동 중 40.2%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59.8%는 정부 이외의 공급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닌다(표 4 참조).

〈표 4〉 연령별 유치원 등록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4세	5세	전체
유치원	139,606	32,123	171,729
정부 기관	60,316	8,784	69,100
비정부 기관	79,290	23,339	102,629
지역 학교	65,278	20,517	85,795
영리	811	195	1,006
독립 학교	6,935	1,984	8,919
카톨릭 학교	6,266	643	6,909
종일제보육	85,980	15,588	101,568
총계	225,586	47,711	273,297

주: 중복 등록 사례가 있음.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Preschool Education, Australia, 2012.

유아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 규모는 전체 대상 아동의 90%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 대상별로 95% 이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이러한 목표에도 달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상 아동 교육 프로그램 등록 아동 비율은 60% 미만이다.

〈표 5〉 유치원 이용 아동 등록 비율

단위: %

구분	추정	실제
아동 대비 유치원 등록 아동 비율	95	89
원주민 아동 대비 유치원 등록 아동 비율	95	82
벽지 원주민 아동 대비 유치원 등록 아동 비율	95	88
주당 15시간 이상 아동 교육 프로그램 등록 아동비율	95	56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13), Annual Report 2012-13.

2)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력

유치원 인력은 원장, 교사, 및 기타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원장과 교사 인력이 전체 인력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외에 도우미와 기타 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도우미의 수가 교사 수보다 많다.

이들 인력의 학력을 보면 교사와 원장의 학력은 4년제 이하가 다수이지만, 교사 36.8%, 원장 33.1%가 석사 수료나 석사학위 이상이다.

〈표 6〉 학력별 유치원 인력 구성: 2012년

단위: 명

구분	원장/조정자	교사	도우미	기타 인력	전체
4년제 이하	1,294	6,065	189	94	7,642
석사 수료	439	1,638	271	21	2,369
석사 이상	203	2,032	8,783	230	11,248
해당사항 없음	5	235	2,349	160	2,749
총 계	1,941	9,970	11,592	505	24,008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Preschool Education, Australia, 2012.

3) 이용 시간 및 부모 비용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조사가 실시된 1주일 동안 유치원을 이용한 만 4, 5세 아동 비율은 85.2%이었다.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14시간이었다. 평균 비용은 48.4달러였다.

〈표 8〉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별 주당 이용 시간별 아동수를 나타낸다. 2010년 조사에서는 60% 정도가 주당 15시간 이상을 이용한다. 15시간 이상 비율은 유치원보다 종일제 보육시설 유아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높다. 유치원이 56%이고, 종일제 보육시설이 68%이다.

〈표 7〉 4. 5세 아동 유치원 이용률, 주당 평균 이용시간 및 비용: 2012년

단위: %, 시간, ADU, 1,000명

구분	이용률	주당 평균 시간	주당 비용 평균	수
전체	85.2	14.0	48.4	321.0
양부모 맞벌이	90.7	14.2	58.0	143.5
양부모 홀벌이	87.9	14.1	50.2	98.6
양부모 무직	68.1	11.7	15.5	16.6
한부모 미취업	80.2	15.5	36.4	23.5
미취업	67.6	12.5	17.8	36.9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12.

〈표 8〉 주당 이용 시간별 재원 유치원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1~4시간	5~9시간	10~14시간	15시간 이상	전체
유치원	641	6,136	68,711	96,241	171,729
정부 기관	199	1,355	21,329	46,217	69,100
비정부 기관	442	4,781	47,382	50,024	102,629
종일제보육	2,289	9,308	21,039	68,932	101,568
총계	2,930	15,444	89,750	165,173	273,297

주: 중복 등록 사례가 있음.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11.

2. 영유아교육 프레임: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 형성 (Belonging, Being and Becoming the Early Years Framework:EYLF)

호주는 “모든 어린이는 자신과 국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최상의 인생 출발을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유아 교육자들에게 아동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화하고 미래의 학습 성공을 위한 토대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교육 프레임을 개발했다.

이 프레임은 국가 보육·교육 서비스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과 동법 규칙(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에 기초한 것으로, 전국의 종일제, 유치원, 유아원, 가정보육, 방과후보육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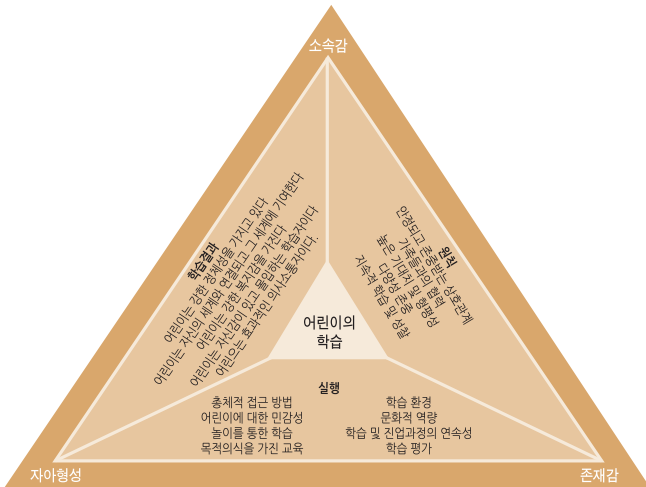
호주 영유아교육 프레임에 토대가 되는 것은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 형성이다. 소속감은 아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존재감 및 자아 형성에 핵심이 된다. 존재감은 아동의 현 상태의 중요성 인식으로, 현재와 자신들을 알아가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삶의 기쁨과 복잡함에 관여되며, 일상생활에서의 도전을 맞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아 형성은 아동이 배우고 성장함에 따라 초기 연령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반영한다(그림 1 참조).

프레임은 원칙과 실행과 학습결과로 구성된다. 우선 원칙은 아동이 안정되고 존중받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가족들과 협력하며, 높은

기대치 및 형평성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학습 및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으로 영유아교육이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총체적 접근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놀이를 통해 학습하게 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 목적의식을 가지며 학습 환경과 문화적 역량을 구축하고, 학습 및 진입 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실행한다.

아동이 사회에 온전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학습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출생에서 5세에 진입하여 학교 진학 이전까지의 모든 어린이의 학습을 위한 최고 수준의 기대치를 명시하고, 이들 기대치를 아래의 다섯 가지 학습 결과를 통해 표명하였다.



자료: 호주 교육고용노사관계부(2009),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형성-호주 조기 학습 제도.

(그림 1) 영유아교육 프레임 요소들

〈표 9〉 5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학습 결과

구 분	항 목
<p>결과1: 어린이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지원되고 있음을 느낀다. - 어린이는 자율성, 상호 의존, 회복력 및 주체성이 새롭게 발달한다. - 어린이는 지식과 자신감에 기초한 자아 정체성이 발달한다. - 어린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돌봄과 공감과 존중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운다.
<p>결과2: 어린이는 자신의 세계와 연결되고 그 세계에 기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는 그룹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를 위해 필요한 상호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 - 어린이는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어린이는 공정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환경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p>결과3: 어린이는 강한 복지감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는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 복지에서 강해진다. - 어린이는 자신의 건강과 신체적 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킨다.
<p>결과4: 어린이는 자신감이 있고 몰입하는 학습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는 호기심, 협동, 자신감, 창의성, 노력, 열의, 인내, 상상력 및 성찰 등 학습을 위한 기질을 발달시킨다. - 어린이는 문제 해결, 문의, 실험, 가정 설정, 연구 및 조사와 같은 다양한 기술과 절차를 발달시킨다. - 어린이는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으로 이동 적용시킨다. - 어린이는 사람과 장소, 테크놀로지 및 자연적 가공적 재료와 연결시켜 자신의 학습 자원을 제공한다.
<p>결과5: 어린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한다. - 어린이는 다양한 텍스트에 관여하고 이들 텍스트에서 의미를 파악한다. - 어린이는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의미를 창출한다. - 어린이는 부호와 패턴 시스템이 작용하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 어린이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며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다.

자료: Australian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3. 보육 서비스

가. 서비스 유형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Approved Care)과 등록보육(Registered Care) 서비스로 구분된다. 인가보육(Approved Care)은 주 및 지방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이고,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은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은 개인에 의한 보육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보육 서비스 유형은 다양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가보육 서비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 내 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등록보육은 비동거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포함된다.

종일제보육은 기관 보육으로 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학아동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취업 및 근로 상태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호주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70% 이상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된다.

가정보육(Family Day Care)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적인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로, 기관보육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취학 아동을 보육하기도 한다. 가정보육 제공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체로 가정보육센터가 일정 수의 가정보육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방과후 보육시설(Outside School Hours Care)은 주로 4세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시간 전이나 방과후, 휴일 등에 실시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보통 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학부모 연합회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한다.

가정 내 보육(In-home Care)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소외지역 거주 아동, 장애 아동처럼 집 밖에서 보육받는 것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며, 가정보육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 보육센터가 일정 수의 가정 내 보육 제공자를 관리한다.

일시보육은 일시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짧은 시간이나 응급 상황시 이용 가능하다. 주로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이외에 소외지역이나 원주민을 대상으로 몇몇 특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는 농촌 및 벽지를 중심으로 종일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이동보육, 농장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은 부모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원주민 아동의 문화적·사회적·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를 제공하고, 소외지역을 이동하며 아동을 보육하거나 같이 놀아주는 서비스(Mobile Children's Services)

가 있다. 이는 일시보육, 휴일보육, 놀이집단, 이야기 들려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난감이나 비디오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주변의 아동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원주민에게 놀이집단과 같은 초기 학습과 영양 서비스도 제공한다.

2) 등록보육 서비스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FAO)에 보육 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 등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3) 직장보육

1990년대 중반부터 ILO협약 제156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권장되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소수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자녀 보육을 종일제보육센터 또는 가정보육에 위탁하기도 한다.

나. 서비스 규모와 공급 주체

2010년 기준으로 종일제 보육시설은 5,780여개소로 추정된다. 가정보육과 가정 내 보육은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가정보육 기구는 313개소이고 가정 내 보육시설은 69개소이다. 방과후보육은 3,150개소이고 방학보육 기관이 2,157개소이다. 유

치원은 4,800여개소로 추정하였다.

〈표 10〉 연도별 서비스 공급 기관 개소수

단위: 개소

구 분	2004	2006	2010
서비스			16,378
보육시설	7,901	8,621	11,558
종일제보육	3,812	4,346	5,784
가정보육	318	305	313
가정 내 보육	68	70	69
일시보육	101	96	85
방과후보육	2,137	2,256	3,150
방학보육	1,340	1,453	2,157
기타	125	95	-
유치원			4,820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04-2010), Australian Government Census of Child Care Service.

이러한 공급은 과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지만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일제 보육시설과 방과후보육, 방학보육의 수는 증가한 반면에 가정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보육은 약간 감소하거나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일제 시설 확산과 더불어 이러한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인 유형의 보육 서비스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호주 사립보육시설의 특성 중 하나는 이들 보육시설 중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한 자본이 체인 형태로 설치한 시설이 25%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¹⁰⁾ 이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단시간에 보육

10) 초기에 ABC Learning Centres, Hutchison's Child Care Service, Childs Family Kindergatens, Kids Campus가 법인형태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Kids Campus는 ABC Learning Centres에 합병되었음. 이 중 ABC Learning Center가 호주에 905개 체인을 운영하는 거대한 보육 공급업체가 되었음.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이다. 주 및 지역정부에 기초한 공공 보육시설은 약 15% 정도이며 대체로 3/4가 영리에 기반을 둔 시설이었다(OECD, 2002). 지역별 차이가 많아서 시설수로 보면 Tas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3개 지역은 공공 보육시설이 70%에 가까운 반면에, 그 이외 지역은 사립 보육 시설이 더 많고 특히 Queensland 주는 공공 보육시설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수도 이와 유사하여 공공시설의 비중이 최대 Tasmania 주는 76.3%인데 비하여 Queensland 주는 16.2%에 불과하였다(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ce census, 2004).

그러나 최근에 호주 어린이집 공급자 중 영리 부분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가 생겼다. 즉, 호주 종일제 어린이집의 약 1/3을 운영하던 영리 어린이집 체인 ABC 그룹이 2009년에 문을 닫고, 어린이집들은 상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분산되어 다수가 비영리로 운영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단체들의 연합인 비영리 유한회사(Good Start Childcare Limited)가 다수인 650개 센터를 구입하여 운영한다.¹¹⁾

이 기관은 2011년 11월 공식적으로 Goodstart Early Learning으로 명명하고 아동 보호(Childcare)로부터 초기교육(Early Learning)으로 우선 사항 전환을 표방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종일제보육 이외에 방학 중 보호 기능도 수행한다. Goodstart의 3가지 전략적 목표는 서비스의 질(Quality), 통합(Inclusion), 안정성(Stability)이다. 영유아 교육의

11) <http://www.childcare.com.au/goodstart-childcare-limited>

질을 제고하고 모든 아동이 영유아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잉여금을 질 제고와 통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은 연방정부가 나서서 7년 내 상환 조건으로 1,500만 달러를 융자해 주었기에 가능하였다.

센터 인수 이후 안정을 찾으면서 점차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2013년 현재 655개 센터에서 15,000명 직원이 61,000 가정의 아동 73,000명을 교육·보호하고 있다. 총 예산 규모는 2010~2011년 6억 5,277만 달러에서 2011~2012년 7억 3,644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기관의 현금 수입 중 정부의 부모 보육료 보조금이 4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1~2012년도에 순이익은 전년도 270만 달러에서 803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600만 달러를 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 입소 우선순위

호주 보육당국은 입소 우선순위 지침(Priority of Access Guideline)을 정하고 있다. 입소 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이러한 기준 안에서도 원주민, 장애인 포함 가족 아동, 가구소득 기준이 2013~2014년 41,902달러 이하이거나 당사자나 그 배우자가

소득보장 급여를 받는 가족의 자녀, 비영어권 가족의 자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족의 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3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 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외에 방과후보육은 초등학생이 우선이고, 기업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피고용자의 아동이 입소 우선순위를 갖는다.

라. 이용 비용

영유아 보육료나 교육비는 학교부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자율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보육료를 규제하지 않는데(OECD, 2002), 시설에 따라서 보육료 편차가 크다. 2006년 보육 서비스 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 Services) 결과 종일제보육시설 보육료는 주당 평균 보육료는 233달러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공공과 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는 없고, 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시설별 차이는 있어서 170달러 미만에서부터 260달러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표 11〉 연도별 종일제 보육시설 1주일 보육료: 1995~2006

단위: ADU

구분	1994	1997	1999	2002	2004	2006
공공 보육시설	163	162	171	188	211	233
사립 보육시설	142	152	161	184	208	
가정보육/50시간	122	130	139	163	185	215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1995-2006), Australian Government Census of Child Care Service,

4. 보육인력

가. 자격 기준

호주는 보육인력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일부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업자격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호주는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국가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도 대학에 따라 보육대상연령 기준이 아동연령 0~8세, 3~8세, 0~15세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습시간과 실습처 선정, 캠퍼스 위주의 교육과 원거리 교육 등 교육전달의 방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캠퍼스 내 강의와 원거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제에서 연구과정이 강조되는 4년제 “honours”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 1970년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기술교육전문대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에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신설되기 시작했는데, 전문대학에서 1년 과정을 끝내면 Certificate를 받게 되고, 2년의 과정을 끝내면 준학사에 해당되는 Diploma를 받게 된다. 전문대학의 보육 과정은 가정보육, 시설보육, 방과후보육 및 연습생(traineeship)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습생 1년 과정의 경우 1,045시간의 현장실습과 390시간의 학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그 동안 보육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주의 국립훈련원(the National Training Board)에서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경력 인증 척도를 개발하여 보육 직업 자격증(Australian Vocational Certificates)을 수여하였다. 경력에 따라서 1~6단계까지는 초급에서 2급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그 이상 단계는 1급에 해당하도록 하여 대학졸업자에 준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나. 보육 인력

1) 규모 및 소지 자격

2010년도 전국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및 인력 조사(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ces Census)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139,187명이다. 이 중에 88.8%가 종일제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유치원에 13.3%, 방과후 보육시설에 11.7%, 방학 보육시설에 10.1%, 가정보육에 9.8%가 근무한다.

〈표 12〉 보육인력 자격: 2011

최종 자격	단위: %							
	PS	LDC	FDC	IHC	OCC	OSHC	VAC	전체
학사 이상	36.7	9.4	4.5	6.3	8.3	9.3	14.2	14.0
4년제 학사	27.3	6.0	2.8	3.3	5.0	6.4	11.0	9.8
3년제 학사	9.4	3.4	1.7	3.1	3.3	2.9	3.1	4.2
상급 자격	17.4	31.9	16.0	13.4	36.7	18.0	17.0	24.6
자격 III, IV	17.3	35.2	36.0	25.6	31.9	19.9	19.5	28.8
자격 III 미만	2.8	1.8	3.4	4.7	3.6	2.9	2.4	2.3
자격 소지자 소계	74.2	78.3	59.9	50.1	80.5	50.0	53.1	69.8
무자격	25.8	21.7	40.1	49.9	19.5	50.0	46.9	3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3), 2010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Census.

(표 12)는 보육서비스 유형별 보육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3년 이상 대학 자격자는 14% 정도이다. 자격이 없는 직원이 30% 정도 종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3년의 기본 경력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인력은 보육센터 30%이다. 보육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자격이 고급 디플로마(Advanced Diploma)와 직업 자격 III 및 IV 소지 인력이다.¹²⁾

서비스 유형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종일제 보육시설에 3년제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 비율이 37% 수준으로 높고 가정보육과 가정내 보육 종사 인력의 자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무자격자도 50%가 넘는다.

이들의 성별은 94.3%가 여성이고 남자는 소수이다. 연령은 방과후 보육 종사자 중 52.2%, 방학보호 종사자 중 56.7%가 15~29세였고, 유치원 종사자 중 65.6%, 가정보육의 63.3%가 40세 이상으로 시설유형별로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 원주민 출신 종사자는 1.2%이다.

2) 근로형태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적으로 88.6%가 계약에 의해서 고용되는데 78.1%가 1차 계약이다. 인력의 1.1%는 자원봉사 인력이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35~40시간 풀타임 종사자가 33.6%이고 장시간 파트타임(30~34시간)이 29.3%, 9시간 미만이 29.6%, 41시간 이상이 7.5%이다. 근로자의 69.8%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14%가 3년 이상 대학 자격자이다. 또한 26.6%가

12) 호주 직업교육훈련 자격은 자격(Certificate) I~IV 등급, 디플로마(Diploma), 고급 디플로마(Advanced Diploma)로 구성됨. Advanced Diploma는 고등 교육부분 준학사에 해당됨.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있다. 특히 일시보육 근무자의 44.1%가 10년 이상 경력자이다. 1년 미만이 9.2%이고 9.3%가 현직에 10년 이상 일하는 인력이다. 특히 10년 이상은 가정보육 근무자의 24.7%이다. 45.0%가 현직에서 3년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인력이다.

근무자들은 88%가 그들의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51.7%가 근무조건과 급여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0.3%가 12개월 기간 동안 이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30.8%가 현재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급여 수준은 연간 유치원 종일제 근로자가 52,000달러, 보육시설은 31,200~51,999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보육 서비스 이용

1) 이용률과 이용 이유

호주의 보육통계는 전반적으로 방과후 아동을 포함하여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0~12세아를 연령별로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이용률을 보면 360만명의 아동 중 2011년 6월 기준으로, 52%가 보육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23.7%가 공식적 보육에 참여하고 38.6%는 비공식적 보육을 이용하였다. 공식보육만 이용한 아동은 전체의 13.6%이고 28.5%는 비공식 보육만 이용하였으며, 10.1%는 공식보육과 비공식 보육을 모두 이용하였다.

공식 서비스 중 종일제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아는 6.6%로 낮고 이후 1세아 30.1%, 2세아 46.1%, 3세아 45.8%로 높아지

다가 4세이는 32.1%로 다소 낮아진다. 가정보육의 비중은 크지 않아서 최대 2세에 8%를 차지한다. 일시보육의 경우에도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서 2세에 2.5%가 최고치를 나타내며 1% 이내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인다.

비공식보육 서비스는 조부모 보육이 25.7%이고 비동거 부모가 돌보는 비율도 7.0%이며 5.9%가 기타 친인척이다. 조부모 보육은 아동연령별로 1, 2세에 30%가 넘으나 그 이후에도 20% 이상을 유지한다. 비동거보육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표 12〉 보육인력 자격: 2011

단위: %, 1,000명

구분	1세 미만	1	2	3	4	5	6-8	9-12	전체
이용 여부									
이용	32.5	62.6	73.6	70.1	63.0	51.0	49.8	43.3	52.2
미이용	67.5	37.4	26.4	29.9	37.0	49.0	50.2	56.7	47.8
공식 여부									
공식보육만	3.8	19.6	32.7	30.4	22.2	12.3	11.3	4.6	13.6
비공식보육만	24.9	26.5	18.2	18.3	24.5	29.4	31.3	34.1	28.5
공식/비공식 모두	3.8	16.5	22.7	21.5	16.3	9.3	7.2	4.5	10.1
유형									
공식보육									
학교 밖	-	-	-	-	1.8	13.7	17.0	9.0	7.7
종일제	6.6	30.1	46.1	45.8	32.1	6.9	1.0	-	13.6
가정보육	1.0	4.7	8.0	5.2	4.3	1.6	0.7	0.2	2.2
일시보육	-	1.7	2.5	1.9	1.2	-	0.1	-	0.6
소계	7.6	36.1	55.4	51.8	38.5	21.7	18.5	9.1	23.7
비공식보육									
조부모	22.6	35.8	33.5	28.9	29.7	26.6	24.1	20.8	25.7
비동거부모	1.7	3.4	3.2	6.1	6.5	7.9	8.1	9.5	7.0
기타 친척	5.2	6.6	4.9	7.2	5.3	5.8	6.8	9.6	7.2
비혈연	2.9	4.6	4.9	5.8	5.9	6.5	7.4	6.2	5.9
소계	28.7	43.0	40.9	39.7	40.8	38.7	38.5	38.6	38.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동수	289.8	288.0	296.6	293.3	285.0	281.7	814.4	1,099.3	3,648.1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11.

〈표 13〉은 보육아동의 이용기관 분포 연도별 비교이다. 2010년 기준으로 아동 수는 99만명이다. 이들은 종일제 기관 55%, 학교 밖과 방학보육이 각각 21%, 13%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종일제 기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없거나 낮아졌다.

〈표 14〉 유형별 보육아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4		2006		2010	
	아동 수	비율	아동 수	비율	아동 수	비율
종일제보육	383,020	50.9	420,110	52.4	543,539	54.9
가정보육	89,300	11.9	84,350	10.5	93,738	9.5
가정 내 보육	3,240	0.4	3,200	0.4	3,513	0.4
일시보육	7,359	1.0	6,767	0.8	6,401	0.6
학교 밖 보육	160,790	21.4	173,770	21.7	211,514	21.4
방학보육	101,710	13.5	107,280	13.4	130,747	13.2
기타	7,341	1.0	5,583	0.7	-	-
전체	752,760	100.0	801,060	100.0	989,452	100.0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04-2006), Australian Government Census of Child Care Service.

2) 이용 이유

보육 서비스 이용 이유는 공식보육 이용 아동의 64%와 비공식 보육 이용 아동의 46.9%가 부모의 일과 관련된 이용으로 대리보호가 목적이다. 공식보육 이용 아동의 24.7%, 비공식 보육 이용의 17.6%는 아동발달 등 아동 이익을 위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 이유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이유가 차이가 난다. 당연한 결

과이지만 종일제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은 일과 관련된 대리보호가 각각 60% 이상으로 높고, 인가보육 중 일시보육의 경우가 일과 관련된 이용 비율이 27.1%로 비교적 낮다. 비공식보육도 46.9%가 일과 관련된 보육인데, 조부모 보육과 친인척 보육이 각각 50.3%, 46.0%로 일 관련 이유의 비율이 높고 비동거 부모는 아동의 이익 때문이라는 비율이 62.4%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비동거 부모의 보육으로, 이는 62.4%가 아동 이익을 이유로 들고 있다(표 15 참조).

〈표 15〉 미취학 아동 서비스 제공자별 보육서비스 주된 이용 이유: 2011

단위: %

구분	일 관련	개인사정	아동이익	계(수)
공식보육				
종일보육센터	65.6	9.7	24.0	100.0
가정보육센터	62.0	14.6	22.4	100.0
일시보육센터	27.1	19.7	50.8	100.0
소계	64.0	10.5	24.7	100.0
비공식보육				
조부모	50.3	31.4	14.5	100.0
비동거부모	19.8	16.2	62.4	100.0
친인척	46.0	40.6	9.8	100.0
기타	52.1	38.5	5.6	100.0
소계	46.9	31.8	17.6	100.0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11.

3) 이용시간

12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가보육과 등록보육 모두 일주일당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평균 17시간이다. 이용시간 분포로는 5시간 미만이 28.9%로 비교적 다수이고 40시간 이상은 11.5%이다.

이용시간은 제공받는 보육 서비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종일보육센터의 경우 평균 19.9시간, 가정보육센터 16.3시간 정도이고 일시보육은 5.4시간이다. 종일제의 경우 분포상으로는 10~19시간에 37.8%가 분포한다. 등록보육의 경우도 비동거 부모 보육이 35.4시간으로 다소 길고 조부모 보육은 8시간이다(표 16 참조).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호주 보육료 지원정책은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의 정책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한다. 둘째, 호주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고, 이들 취업의 상당수가 시간제라는 특성이 있다.

〈표 16〉 0~12세 아동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분포: 2011

단위: %, 시간, 1,000명

구분	5시간 미만	5-9	10-19	20-29	30-34	35-39	40시간 이상	전체	평균
이용 전체	28.9	17.9	21.7	13.1	4.5	2.3	11.5	100.0	17.3
유형									
공식보육									
학교밖	45.3	31.3	19.7	3.2	0.5	-	-	100.0	6.4
종일제	1.3	18.5	37.8	22.2	7.0	3.0	10.1	100.0	19.9
가정보육	6.4	27.5	35.3	17.2	4.3	2.2	7.0	100.0	16.3
일시보육	53.1	29.0	17.9	-	-	-	-	100.0	5.4
소계	16.5	23.3	31.6	15.4	4.6	2.0	6.7	100.0	15.2
비공식보육									
조부모	51.4	22.7	15.9	6.3	0.8	0.4	2.4	100.0	8.0
비동거부모	11.6	8.1	13.6	23.6	6.9	3.8	32.5	100.0	35.4
기타 친척	66.5	15.5	10.0	3.5	0.8	-	3.0	100.0	6.8
비혈연	60.7	19.4	13.9	2.4	0.7	-	1.7	100.0	6.8
소계	42.6	19.7	16.1	8.9	2.4	1.3	9.1	100.0	14.0
공식 여부									
공식보육만	16.0	22.0	31.5	15.1	5.0	2.1	8.4	100.0	15.9
비공식보육만	44.2	17.9	16.3	8.6	2.3	1.1	2.4	100.0	14.1
공식/비공식 모두	3.1	12.4	24.0	23.4	10.1	6.0	20.9	100.0	28.2
아동 수	549.9	340.7	413.6	250.0	86.1	44.2	62.8	155.5	1,902.7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11.

영유아 보육·교육 품질관리

1. 국가 품질 체계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가. 개요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각 주와는 양자 협정을 통하여 일관된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2009년 12월 호주정부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는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국가 품질 아젠다에 관한 국가 파트너십 협정(the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NPA)을 맺었다. 이로써 호주정부위원회는 2009년 6월 국가 품질 프레임으로 알려진 영유아와 방과후 교육과 보호의 질 관

리 체계를 지방정부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후 2011년 3월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국가 품질 아젠다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 정부간 협정과 국가 품질 프레임 실행이 촉진된다.

호주는 2010년에 법을 정비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국가 보육 교육 국가 품질 체계(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를 시행하는데, 이 새로운 체계는 서비스에 대한 인가와 질적 수준 점검을 담당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각 주와 지역 정부와의 양자 협정을 통하여 이를 전국에서 적용하도록 도모하고, 각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맺은 협정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에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NQF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질을 제고함으로써 변화를 촉진한다. 첫째는 국가 학습체계를 지원하고 증진하는 일이다. 이 교육 프레임은 영유아교육 프레임과 초등학생 보호 두 가지이다.¹³⁾ 둘째는 교사 대 아동 수를 개선하여 각 아동들이 보다 개별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로 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출생부터 24개월 1:4,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 3세 이상 1:11이다. 방과후 및 혼합연령은 1:7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가정보육 조정기구 인력 일부 자격 기준이 변경된다.¹⁴⁾ 셋째, 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일이다. 각 교사들이 아동 학습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교사 자격은 교사 대 아동 수와 더불어 2020년

13) 영유아 교육 프레임인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 형성(Belonging, Being and Becoming the Early Years Framework; EYLF) 과 초등학생 보호 프레임인 '나의 시간, 우리 장소(My Time, Our Place: Framework for School Age Care in Australia(Framework for School Age Care))'임 .

14) 보육교육품질관리원(ACECQA) 뉴스레터 Issue 13: 29 August 2013

까지 점차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넷째는 새로운 평가체계이다. 각 호주의 가정에서 아동 기관 교육과 보호에 관하여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국가 품질 체계는 기관의 평가뿐만 아닌 교사의 자격 요건과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국가 기관의 설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적 수준 관리 체계의 개선이다.

나. 구성요소

국가 교육 보육 품질 체계의 목적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있고, 그 수단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호주 모든 아동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질을 평가하는 법인 국가 보육·교육 서비스 법(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과 그 하위 법령(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교육 서비스 질 관리의 국가 기준이 되는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¹⁵⁾의 적용이다. 셋째는 국가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절차와 과정의 구축이다. 넷째는 새로 정비한 규제,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조직인 호주 아동 보육·교육 품질관리원(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의 설립이다. 이 기관은 국가

15) National Quality Standar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School Age Care

기관으로 국가 품질 체계를 관장하고 이 새로운 체계가 전국에 일관성 있는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각 지방정부에는 책임자를 두고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적 기준에 따라 인가, 모니터링, 평가 등의 업무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 보육·교육 품질 관리원(ACECQA) 운영

보육·교육 품질관리원(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은 학교 교육 및 영유아 상임위원회(SCEEC)¹⁶에서 임명한 13명의 이사회(The ACECQA Board)가 의해 운영된다. 8명은 각 주 장관이, 4명은 연방정부 장관이 임명하고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임명한다. 이사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호주 교육 영유아 발달 및 청소년 관련 고위급 위원회(AEEYSOC)¹⁷가 업무 실적 등을 보고한다.

보육·교육 품질관리원은 전략과 운영(Stratgy and Operation), 소통과 계약(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기관 서비스(Corporative Service)의 3개 본부에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통과 계약(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본부 중 품질 아젠다 IT 시스템은 교육자와 시설운영자를 위한 온라인 체계로 각 주와 지역 정부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6) Standing Council on school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17) Australian Educa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Youth Affairs Senior Officials Committee

2. 국가 품질 기준

(National Quality Standard)

가. 국가 품질 기준 요소

2012년 1월부터 전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국가 품질 체계(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시행과 함께 보육 시설 평가인증 체제도 개편하여 교육·보육 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적용해 온 보육 서비스에 대한 기존 3종의 평가기준은 각기 다른 체계로 만들어 운영되고 있었다. 종일제 보육시설 평가기준은 7개 영역 33개 원칙(principles)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정 보육 평가기준은 6개 영역, 29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과후 보육의 경우 8개 영역, 30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불충분, 충분, 우수, 매우 우수한 4가지로 평가되었다.

2012년 개편으로 국가 품질 체계(NQF)의 핵심이 되는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이전에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따로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체계의 목적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함이다.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관련된 7가지 분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물리적 환경, 직원 사항,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로 구성된다. 각 분야는 2가지 혹은 3가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8가지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각 기준 하위에는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 총 58가지의 요소가 있다(표 17 참고).

이는 국가 영유아교육 체계(Belonging, Being and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및 방과후 보육 체계(My Time, Our Place: Framework for School Age Care in Australia(Framework for School Age Care))와 연계된다.

2012년 중순부터 적용된 7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17〉 국가 품질 기준(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구성

분야 1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기준 1	승인된 학습안은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강화하는 커리큘럼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요소 1	커리큘럼은 아동의 정체성, 웰빙, 자신감,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공헌한다.
요소 2	아동의 현재 지식, 개념, 문화, 능력, 흥미는 프로그램의 기초이다.
요소 3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습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소 4	각 아동의 진전과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는 가족이 열람 가능하다.
요소 5	모든 아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요소 6	아동의 부모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사건 및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된다.

분야 1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	--------------

- 기준 2 교육자와 공동 조직자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달하는 것에 있어 능동적이고 반영적이다.
- 요소 1 아동의 학습과 발달은 계획과 기록, 평가의 지속적인 순환의 한 부분으로서 평가된다.
- 요소 2 교육자는 아동의 개념과 놀이에 반응하고 각 아동의 학습을 확장하고 비계화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교수법을 사용한다.
- 요소 3 아동 개인, 집단 모두에게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비판적 반영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 규칙적으로 사용된다.

분야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	--------------

- 기준 1 아동의 건강이 증진된다.
- 요소 1 아동의 건강에 관련된 욕구가 지원된다.
- 요소 2 아동에게 안정이 제공되고, 여기에는 각 아동의 수면, 휴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있다.
- 요소 3 효과적인 위생 습관이 수립되고 실행된다.
- 요소 4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조치와 상처, 각종 질환을 관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
- 기준 2 건강한 식사와 신체적 활동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진다.
- 요소 1 건강한 식사가 이루어지고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은 영양이 있고, 각 아동에 적절하다.
- 요소 2 계획되었지만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활동이 향상되고 각자에게 적용된다.
-
- 기준 3 아동은 보호된다.
- 요소 1 아동은 항상 충분히 관찰된다.
- 요소 2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가 이루어진다.
- 요소 3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이 관련 권위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개발되고 실행된다.
- 요소 4 모든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학대와 방치의 위험에 대처할 책임을 진다.

분야3	물리적 환경
<p>기준 1 시설 부지에 대한 위치와 계획은 서비스 조직을 위해 적절하다.</p> <p>요소 1 실내·외 공간, 건물, 시설설비와 자원은 목적에 알맞다.</p> <p>요소 2 부지와 시설설비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잘 유지되고 있다.</p> <p>요소 3 시설은 모든 아동의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되고 선택되어야 하며,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유연한 상호 간 사용이 이루어진다.</p>	
<p>기준 2 환경은 폭넓고, 놀이를 통한 독립적인 학습과 탐구과정, 자신감이 촉진된다.</p> <p>요소 1 실내·외 공간은 건물 및 주변환경에서 모든 아동이 질 좋은 경험을 하며 참여하도록 기획되고 구성된다.</p> <p>요소 2 자원, 재료, 장치 등이 아동 수에 맞게 충분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용이 허가된다.</p>	
<p>기준 3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공헌하고,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p> <p>요소 1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한 습관은 서비스 운영 안에서 이루어진다.</p> <p>요소 2 아동은 환경에 있어 책임감과 환경을 위한 존중감을 기질 수 있도록 지원된다.</p>	
분야4	직원 사항
<p>기준 1 직원의 배치는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강화하고 안전과 웰빙을 보장한다.</p> <p>요소 1 교육자와 아동 비율과 교육자의 자격 필요조건은 언제나 유지된다.</p> <p>기준 2 교육자, 공동조직원, 직원들은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윤리적이다.</p> <p>요소 1 전문적인 기준이 있어, 실행, 상호작용, 관계를 안내한다.</p> <p>요소 2 교육자, 공동조직원, 직원들은 협동적으로 일하고 도전적이고 지지적이며, 실행과 관계를 향상시키고 서로를 통해 배운다.</p> <p>요소 3 상호작용은 상호 존중과 각자의 전략 및 기술에 대한 인식 및 가치를 전달한다.</p>	
분야5	영유아와의 관계
<p>기준 1 아동과 존중적이고 공평한 관계가 유지되고 개발된다.</p> <p>요소 1 아동과의 관계는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신뢰감있다.</p> <p>요소 2 모든 아동은 교육자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학습 및 삶을 위한 기술의 습득을 지지하는 열린 관계를 맺는다.</p> <p>요소 3 아동은 안정감, 자신감, 소속감을 느끼도록 지원된다.</p>	

분야 5	영유아와의 관계
------	----------

- 기준 1 아동과 존중적이고 공평한 관계가 유지되고 개발된다.
- 요소 1 아동과의 관계는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신뢰감있다.
- 요소 2 모든 아동은 교육자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학습 및 삶을 위한 기술의 습득을 지지하는 열린 관계를 맺는다.
- 요소 3 아동은 안정감, 자신감, 소속감을 느끼도록 지원된다.
-
- 기준 2 아동은 다른 아동 및 성인과 반응적이고 민감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지원된다.
- 요소 1 아동은 협동적인 학습 기회를 통해 서로로부터 배우고, 함께 일하는 것을 지원받는다.
- 요소 2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타인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된다.
- 요소 3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는 항상 유지된다.

분야 6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	----------------------

- 기준 1 가족과 존중적이고 지지적인 관계가 개발되고 유지된다.
- 요소 1 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체계가 있다.
- 요소 2 가족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서비스를 결정한다.
- 요소 3 서비스에 대한 현재 정보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
- 기준 2 가족은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및 신념에 있어 지원받고 있고 존중받는다.
- 요소 1 가족에 대한 전문지식이 인식되고 아동의 학습 및 웰빙에 대한 결정을 공유한다.
- 요소 2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고, 가족 웰빙과 부모 됨을 지원하는 자원이다.
-
- 기준 3 아동의 학습과 웰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는 다른 조직 및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한다.
- 요소 1 관련 공동체와의 연계 및 지원 단체가 설립되고 유지된다.
- 요소 2 아동에게 있어 학습의 연속성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된다.
- 요소 3 지원의 도움에 대한 접촉 기회가 있다.
- 요소 4 서비스는 지역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한다.

분야 7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
기준 1	효율적인 리더십이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건설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
요소 1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가 있다.
요소 2	교육자, 공동조직자, 스태프들의 인도는 폭 넓다.
요소 3	모든 노력은 서비스의 교육자, 공동조직자의 연관성을 향상시킨다.
요소 4	숙련되고 경험이 있는 교육자를 보장하고, 공동조직자는 커리큘럼의 개발을 이끌며 학습 및 지도에 대한 기대와 설정을 보장한다.
요소 5	아동과 함께하는 성인과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부지에 거주하는 모든 직원들은 적절하다.
기준 2	지속적인 향상에 대한 노력이 있다.
요소 1	철학이 개발되고 철학은 서비스 운영의 모든 면을 안내한다.
요소 2	교육자, 공동조직자, 스태프의 수행은 평가되고 수행을 향상하기 위하여 발전 계획이 존재한다.
요소 3	효율적인 자가 평가와 질 향상 체계가 있다.
기준 3	관리 시스템은 서비스 질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요소 1	정보와 기록은 신뢰할 수 있게 저장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의 필요요건에 따라 유지된다.
요소 2	관리 시스템은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있고 유지된다.
요소 3	규제기관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변화를 공지하며, 불만사항이나 심각한 사고를 알린다.
요소 4	절차는 모든 불만사항과 불평을 다루며,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화하고 공평하게 조사한다.
요소 5	서비스의 실행은 효율적으로 문서화된 정책과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나. 품질 평가 기본 과정

새로운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평가제 절차는 6단계로 구분하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20주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국가 품질관리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인가받은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여 방문·평가한다는 공지를 보낸다. 동시에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종전 평가인증 기관의 인증과 관련된 준수 이력, 서비스, 정보 등을 분석한다. 평가 대상으로 통보 받은 인가된 보육·교육 제공자는 6주 초에 품질 개선 계획(Quality Improvement Plan)을 국가 품질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결과에 따른 장점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을 명시한 품질개선계획 과정을 포함한 문서이다. 이외에도 서비스의 철학을 포함한다.

보육·교육기관은 매년, 또는 품질관리 기관이 요청할 경우에 품질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기관은 개설 3개월 안에 제출한다. 각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품질 개선 계획(Quality Improvement Plan)을 비치하고 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찾고 있는 부모들이 공개하기를 요청할 경우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영역과 항목인 18개 영역 58개 항목을 모두 언급할 필요는 없다. 각 서비스 제공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술하면 된다. 특히 자체평가나 평가과정에서 국가 품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와, 또한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을 서류화하여 지속적 개선 노력을 언급한다. 만약

이 계획서를 12주까지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찰 평가를 나가게 되고, 관찰 평가시에도 제시하지 않으면 법 규정을 적용하여 실패 처리한다.

제2단계로, 6주차에 품질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품질 개선 계획을 전달받고 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보내고, 담당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을 위한 일정과 관련 정보를 2주 전에 공지한다. 도착 시각과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각종 프로토콜을 주고 받는다. 또한 센터는 모든 반(학급)과 공동 구역을 관찰하고 각 연령집단 대표를 심층관찰하며, 가정보육은 먼저 스킴이나 조정기구를 방문한 후에 일부 가정보육 장소를 방문 평가하며, 다시 스킴이나 조정기구로 돌아와서 평가한다는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준비한다.

제3단계는 10주차로 담당자가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검토하는 단계이다. 검토하는 방법은 관찰, 토론 및 서류 검토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평가 담당자와 피평가자 간의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미리 알린 대로 모든 반(학급)과 공동 구역을 관찰하고 각 연령집단 대표를 선정하여 심층 관찰한다. 가정보육은 스킴이나 조정기구를 3시간 정도 방문하고 표본으로 선정한 가정보육 장소를 2~3시간 방문하여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스킴이나 조정기구로 돌아와서 3시간 정도 평가한다. 담당 가정보육 제공자 규모에 따라 방문 가정보육 수가 결정된다.¹⁸⁾ 해당 평가 담당 공무원은 평가 절차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준비한다.

18) 가정보육제공자 1~30명은 3곳, 31~60명 5곳, 61~90명은 7곳, 91~120명은 7명, 121명 이상은 11곳을 방문함.

관찰하는 시간은 방문은 종일제 기관은 2~3일로 최소 6시간 동안 4개 반, 유치원은 2~3일로 6시간 또는 2 session 동안 4개 반을 관찰하며, 방과후보육은 2 session을 관찰하고 방학보육은 하루동안 7.5시간을 관찰한다.

4단계는 15주차로 평가 담당자가 방문 평가한 후에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피평가자에게 보내는 절차이다. 피평가자는 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18주까지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

5단계로 담당자가 피평가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이를 참고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만약에 피드백이 없고 조정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18주차에 절차는 종료한다.

6단계는 20주차로 담당자는 최종보고서를 다시 평가자에게 보내고 14일간 기간을 주고 검토하도록 한다. 이 때 검토 가능 사항과 불가능 사항을 명시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종전에는 검토자(Validator)라고 불렀으나 새로운 체제에서는 담당자(Authorized Officer)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각 주나 지역정부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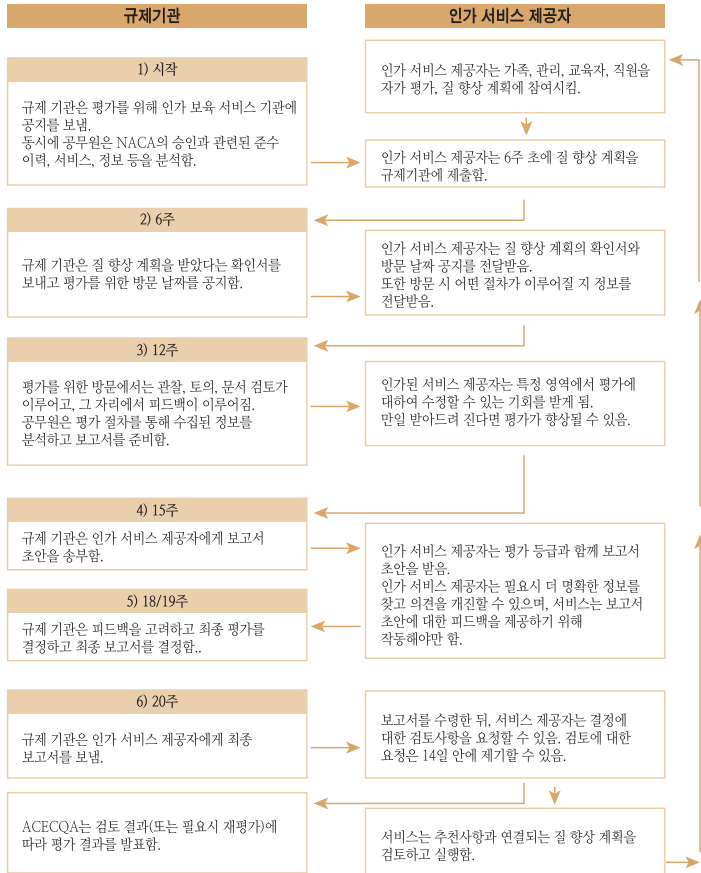
다. 이의 처리 절차

서비스 질 평가는 품질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므로 쉽게 수정 가능한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작은 조정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평가자의 검토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 및 등급화

이후에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그 변화가 등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믿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와 재등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1차 재검토 요청이다. 이는 내부에서 검토하며, 무료로 수수료가 없다. 품질관리 기관은 1차 재검토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를 다시 심의하여 다시 30일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1차 재검토 결과 통보 이후에도 이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14일 안에 2차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급 결정에 서술된 과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였거나 평가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환경요인이나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는 1차 때와 달리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은 가정보육이나 보육·교육 기관 모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5인 미만의 경우 408달러, 25~80인 미만의 경우 615달러, 125인 이상의 경우 816달러이다. 신청을 받은 후 등급 검토 패널(Ratings Review Panels)에서 이를 심의하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등급을 부여, 통보한다.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이것에도 불만이면 다시 교육·보육 서비스 옴브즈만(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Ombudsman; NESO)에게 제심을 신청할 수 있다. NESO는 ACECQA 및 정부 규제 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하게 대우받았을 때 이에 개입하여 돕는 기관이다.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

(그림 2) 국가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 절차

라. 등급

2012년부터 새로운 정부 조직인 호주 아동 보육·교육 품질관리원 (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체계를 관장하게 된다. 이 기관에서 종전에 국립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에서 실시하던 보육서비스 평가인증 제도를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담당기관을 국가 조직에 포함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주 정부에도 조직을 두어¹⁹⁾ 전국에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외에 평가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었다.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의 7가지 영역별 평가를 통하여 하나의 총괄적인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평가 과정을 거쳐 매겨진 영역별 및 총괄적 등급은 부모에게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된다.

각 서비스의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국가 기준 초과(Exceed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 기준 충족(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 기준 도달 노력 중(Working toward National Quality Standard), 현저한 개선 필요(Significant Improvement Required)의 5 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시설의 평가결과인 전체 등급은 영역별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주기가 달라지는데 최우수와 국가 기준 초과는 3년마다, 국가 기준 충족은 2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노력 중 평가를 받은 시설은 1년 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5등급인 현저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시설은 개선 계획과 함께 수시로 방문점검을 받게 되며, 개선 정도에 따라 처벌/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이외에

19) 종전 평가인증기구는 국가기구가 아니고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였음.

상황에 따라서 7개 영역 중 6~7개 영역이 ‘국가 기준 도달 노력 중’ 이면 1년 안에, 3~5개이면 18개월 안에, 1~2개이면 2년 안에 평가를 받게 된다.

〈표 18〉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구분	내용
최우수 (excellent)	- 신청에 의하여 평가당국에서 선정 - 3년간 유효
국가 기준 초과 (Exceed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 대체로 3년마다 평가
국가 기준 충족 (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 대체로 2년마다 평가
국가 기준 도달 노력 중 (Working toward National Quality Standard)	- 대체로 1년마다 평가
현저한 개선 필요 (Significant Improvement Required)	- 한 영역 이상이 현저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경우 - 개선계획 및 수시점검, 개선 미비시 폐쇄조치 가능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 <http://acecqa.gov.au/national-quality-framework/assessment-and-ratings>.

〈표 19〉 서비스 분야별 평가 현황전

구분	단위: %							전체
	QA1	QA2	QA3	QA4	QA5	QA6	QA7	
국가 기준 초과	21.9	21.2	21.0	26.8	35.3	30.9	27.6	22.9
국가 기준 충족	44.2	53.6	49.0	61.4	49.0	50.8	45.9	33.2
국가 기준 도달 노력 중	33.9	25.0	30.0	11.6	15.6	18.3	26.4	43.6
현저한 개선 필요	-	0.2	-	0.1	0.1	-	0.1	0.2

주: QA1-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QA2-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QA3-물리적 환경, QA4-직원 사항, QA5-영유아와의 관계, QA6-가족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 QA7-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3), The NQF Snapshot Q2 2013.

2013년에는 호주 19%의 시설인 2,567개소를 평가하였는데 43.6%가 국가 기준 도달 노력 중, 33.2%의 서비스가 기준 충족, 22.9%가 국가 기준 초과로 평가되었다. 현저한 개선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은 0.2%에 불과하다. 최우수 평가 등급은 신청을 받은 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각 분야에 대한 결과 및 총체적인 평가 결과는 보육·교육 품질관리원(ACECQA)의 웹 사이트(<http://www.acecqa.gov.au>)와 MyChild 웹 사이트(<http://www.mychild.gov.au>)에서 공개된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기록은 또한 웹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평가는 강력한 보육·교육서비스의 품질관리 메커니즘으로, 평가 결과 현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 승인 중단이나 승인 취소가 포함된다.

호주의 보육·교육 비용 지원

1. 지원 개요

호주의 보육료 지원은 자녀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호주의 보편적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 지원체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은 주로 지방정부가 시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주로 연방정부가 아동별 보육급여와 보육환급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외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약간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한다. 지원 및 부모 부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호주 보육에 관한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은 극히 일부이다. 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지원하던 지역사회 종일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기능 원주민 보육시설(Multifunctional Aboriginal Care Service), 연방정부가 공급하는 일시보육시설(Occasional Care Service),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취약지역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지역사회 종일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에 시설 수리비 등을 별도 지원하며, 이외에 장애아동 가정보육 제공자에게는 장애아 가정보육 추가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규로 설치하는 가정보육 및 방과후 시설에 대하여 설비, 장비 및 설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통합지원보조금, 탄력적 지원 자금, 다문화 아동 보육지원 등은 시설별 지원된다. 한편으로 New Southern Wales, Northern Territories 주는 연방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OECD, 2002).

보호자 보육료에 대한 지원 방법은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와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CCR)이다. 2000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보육급여(CCB) 제도로 일원화되었는데, 이러한 보육급여 제도는 그대로 둔 채 2004년 6월부터 다시 보육조세 환급(CCTR)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명칭을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CCR)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 취학전 1년간은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유아교육 등록률 95%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 주와 Northern Territories 주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3개월로 구성된 학기당 40~50달러 정도의 정해진 비용을 낸다.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나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South Australia 주는 2005~2006 회계연도의 경우 유치원 아동 1인당 정부재정이 연 5,700달러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지원 제도 유형

가.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

1) 개요

호주는 2000년 7월부터 종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

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하여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보육료 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는 중산층 이하의 아동을 위한 제도이며,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는 모든 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제도였다. 보육료 보조는 취업과 관련한 저소득층 및 중류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어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자로 한정하였고, 보육료 환불제도는 공식적인 보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보육 이용자에게도 제공되어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메디케어(Medicare)에 아동의 보육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었다.

2000년에 정비된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는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제도로, 당시 지원수준은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시설중심의 인가보육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였다.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계속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는 5,000달러 단위로 보육급여 비율을 정하였으나 현재는 1,000달러 단위로 보육급여 비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수준도 과거에는 무상보육이 없었고 고소득층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는 무상보육이고, 소득 상한 기준도 없다. 2007년 현재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지원 요건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거주 요건, 예방접종, 보육료 지불 책임성의 세 가지이다. 거주 요건으로 호주 시민, 영주 비자, 특별한 분야 비자나 일시보육 비자 소유도 적용 대상이 된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호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며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수적인 예방접종은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원 대상 서비스의 유형은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모두 포함된다.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가정내 보육과 가족지원사무소(FAO)에 등록된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의 경우가 대상이다. 유치원, 유아원, 방과후보육, 기타 일시보육 센터에서 개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2013년 현재 부모는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당 1주일에 최고 24시간, 50시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으로 주당 24시간까지를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자원봉사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이다.²⁰⁾

20)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초과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표 20〉 호주의 보육급여(CCB)의 요건: 2012년

구분	요건
24시간의 C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조건 1주일에 24시간의 CCB를 받을 수 있음. 부모의 소득, 아동의 연령 고려 - 보육시설 이용시간 등에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급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없어 일이나 학업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 - 배우자가 있으나 한 사람은 일이나 학업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장애인임. - 배우자가 있으나 모두 일이나 학업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 * 야간근무자는 아동이나 수면 시간으로 10시간 포함함. * 근로시간 제한 없음. ○ 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용 또는 자영업 - 사업 추진 - 훈련 및 공부 - 구직 - 일하는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일 ○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 2주일에 30시간 이상
50시간의 C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 훈련 · 공부 test 면제 대상 ○ 일 · 훈련 · 공부 test 충족 가능성이 기대되는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또는 장기 서비스 휴가(직)자 - 병가 및 기타 유급 휴가(직)자 - 유급 무급 부모휴가(직)자: 최대 12개월 - 자영업 휴가 및 병가 - Carer Allowance 수급 - Carer Payment 수급 - 장애인 돌보기 - 돌봄 휴가, 돌봄 병가 ○ 일 · 훈련 · 공부 test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중 최소한 1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다른 한 부모는 일 · 훈련 · 공부 test 충족하여야 함) - 부모 중 1인이 해외 거주 또는 감옥에 있을 경우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17종의 소득 지원 수당 중 최소 하나 수급자) - 예외적 환경에 직면한 경우

자료: Work Training, Study test for Child Care Benefit
<http://humanservices.gov.au/>

3) 지원 수준

정부의 지원은 시간당 지원 단가가 적용된다. 호주 보육료는 제약이 없고 연령 간 차이는 없으나 시설간의 차이는 크다.

보육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 상한선을 두어서 한자녀 기준으로 연 소득 14만 2,426달러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 이용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2012~2013년 현재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연 소득이 4만 1,902달러 이하이면 100%의 최고 비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연 소득 1,000달러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 비율(partial rate)이 적용되어 14만 6,542달러에 근접하면 최소비율(16.7%)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일 소득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조손가족이나 특별한 요구 아동에게 최대 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지원 수준은 인가보육은 시간당 3.99달러, 1주일에 50시간이면 199.50달러이고, 등록보육은 시간당 0.66달러, 1주일에 50시간이면 33.30달러이다. 초등학생 방과후보육은 영유아의 85% 수준이 적용된다.

지원수준은 인가보육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저소득 인가보육 이용자는 시간당 3.99달러를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7%인 시간당 0.666달러가 된다. 그러나 등록보육(Registered care)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666달러가 적용된다.

4) 방법

보육급여를 받는 방법은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fee deduction)과 지불한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법(lump sum)이 있다. 매월 감면 받는 경우에도 급여 수준을 가정하고 연말에 소득과 대비하여 정산하게 된다. 환급금을 2주나 4주에 한번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육급여(CCB)를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fee reduction)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한편 등록자 보육 이용 가정이 보육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12개월 이내에 가족지원국에 보육급여 신청서와 보육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 1년에 42일까지는 결석을 하였더라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42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받은 보육급여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유예 조건은 있다. 병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보호자의 휴가로 인한 결석,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공휴일,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명령하였을 경우, 유치원(preschool)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42일 이상 결석하여도 보육급여를 지급한다.

〈표 21〉 호주의 보육급여(CCB) 지원 기준: 2013-2014

단위: ADU

구 분	시간당 최대	주당 최대(50시간)	소득 상한(한자녀)
인가 보육			
한자녀	3.99	199.50	145,642
두자녀	4.16	416.92	150,914
세자녀	4.33	650.57	170,404
이후 자녀당 가산	4.33	216.85	32,219
등록보육	0.666	33.30	

자료: <http://www.mychild.gov.au/pages/CCFactSheets.aspx>

2007년 현재 모든 소득계층이 보육급여(CCB)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보육시간,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등에 따라 정해진다.

〈표 22〉 인가보육시 최고 CCB 비율 지원 시 금액

단위: ADU

구분	아동 수	일주일 당	시간당
최고액	1	168.50	3.37
	2	352.17	3.52
	3	549.63	3.66

자료: Australia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3).

보육급여(CCB)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각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각 회계연도가 끝나면 국세청은 가구의 실제소득을 확인, 가족지원사무소(FAO)에 통보한다. 동 자료에 근거하여 가족지원사무소(FAO)는 보육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심사 후 과다 지출이 이루어졌음이 발견되면 환급절차에 착수한다.

나. 보육료 환급(Child Care Rebate:CCR)

1) 지원 조건

한편,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CCR) 제도는 자녀를 기르면서 일, 훈련 및 공부하는 가족에게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육조세 환급(Child Care Tax Rebate)이던 것을 보육환급으로 개칭하고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체(total fee charged)를 대상으로 가족지원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한도액 이상의 가구라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족도 보육료 환급은 받을 수 있다.

보육료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은 보육급여 지원 대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직장, 직업훈련, 학습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 등이다. 보육급여 대상 어린이집 이용자에만 허용되므로 조부모, 친인척 등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 가정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보육, 방과후보육이다.

2) 지원 수준 및 방법

지원 대상 금액은 부모가 인가보육서비스에 실제로 지불한 실제 비용의 50%인데, 상한선을 두고 있다. 2013~2014년 기준으로 연간 상한액은 아동당 7,500달러이다. 이 기준은 2017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방법은 네 가지이다. 2주마다 보육급여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2주마다 은행계좌로 지급, 분기별로 은행계좌로 지급, 연 1회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다. 기타 추가 지원

1) 취업 교육 훈련 관련 아동 보육비 지원

(JET Child Care Fee Assistance)

이 지원은 실제 보육시설 이용 시간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이용 시간 간의 발생하는 부모 부담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수준은 부모에게 실제로 부과된 보육료와 보육급여가 허용한 비용과의 차액이다.

취업 학업 훈련자의 아동 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고용경로 계획(Employment Pathway Plan)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최대 비율 적용을 받으며 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이다. 이들은 8종²¹⁾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 대상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해당자는 24시간 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50시간 이상에 대해서도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 시간당 1달러가 자부담이다. 그러나 젊은 부모 조력 사업, 무직 가족 지원이나 중등교육 중인 10대 부모에게는 근로 조건과 무관하게 24시간 이상 이용 지원이 허용된다.

21) 8종의 수당은 부모 급여(Parenting Payment), 배우자 수당(Partner Allowance), 미망인 수당(Widow Allowance), 보호자 급여(Carer Payment), 미망인 연금(Widow B Pension), 조산조사에 의한 ABSTUDY, 새 출발 수당(Newstart Allowance), 청년 수당(구직자, 종일제 학생 이외) 등임.

2) 조부모 보육급여

2005년 1월부터는 주 보호자가 조부모이고, 이 조부모가 노령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 대상자인 경우 일반 아동 보육급여율보다 높은 조부모 급여율(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 Rate)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자에 의한 보육 이용자도 주당 5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참여 아동 보육급여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참여 아동 보육급여(The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는 1971년 이민법(교육)과 그 하위법령에 의하여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에게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에 요청하면 보육급여(Special Child Care Benefit)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일정 제한된 기간동안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한다.

3. 부모부담 완화 효과

2012~2013년 인가 보육을 이용한 아동 수는 1,347,000명이었으며, 이는 추정치인 1,321,000명보다 26,000명이 많았다. 인가보육을 이용하면서 보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수는 938,000명이었다. 이중 보육급여(CCB)와 보육환급(CCR)을 모두 수혜받는 가구는 649,000가구였고, CCB을 수혜받는 가구 수는 92,000가구, CCR을 받는 가구 수는 178,000가구였다. 주당 가처분 소득 대비 부모 부담 실제 비율은 8~9%였다.

〈표 23〉 보육료 지원 실적: 2012-2013

구분	단위: 명, (%)	
	추정	실제
인가보육을 이용한 아동 수	1,321,000	1,347,000
인가보육을 이용한 가구 수	941,000	938,000
인가보육을 이용하고 보육비를 지원받은 아동 수 (비율)	918,000 (98)	919,000 (98)
보육급여(CCB)와 보육환급(CCR) 수혜 가족 수	659,000	649,000
보육급여(CCB)만 받는 가족 수	121,000	92,000
보육환급(CCR)만 받는 가족 수	138,000	178,000
인가보육 서비스 수	16,200	16,200
주당 가처분 소득 대비 보육 부담 비율	(8~12)	(8~9)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13), Annual Report 2012 13.

2011년 종일제보육에 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주간 비용은 33.5달러로 산출되었다. 인가보육은 전체가 66.6달러이다. 종일보육은 88달러이고 가정보육은 42달러, 방과후보육은 33달러이다. 등록보육은 조부모가 평균 1달러 미만이고 기타 인력은 13.8달러이다.

소득수준별로 양 부모와 한 부모 가족 모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하는 보육비용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유사한 상황에서는 한부모가 양부모보다 보육료 지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4〉 0~12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분포: 2011

단위: %, ADU

구분	비용 없음	\$1-\$19	\$20-\$39	\$40-\$59	\$60-\$79	\$80 이상	전체	평균
전체	52.0	7.6	9.1	6.8	5.3	12.7	100.0	33.5
인가보육								
방과후보육	4.0	29.8	22.7	13.9	7.5	6.1	100.0	33.4
종일보육	3.1	7.2	14.1	13.6	14.8	34.3	100.0	88.2
가정보육	5.9	23.0	26.1	10.1	9.6	13.0	100.0	42.2
소계	3.6	16.0	18.1	13.5	11.8	23.1	100.0	66.6
등록보육								
조부모	98.1	0.1	0.4	0.8	-	0.3	100.0	0.9
기타	86.4	2.2	3.0	1.9	0.7	5.4	100.0	13.8
소계	92.3	1.1	1.6	1.5	0.3	2.9	100.0	7.3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Child Education and Care, June 2011.

〈표 25〉 0~12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분포: 2011

단위: %, ADU

구분	\$20 이하	\$20-\$59	\$60-\$99	\$100 이상	전체	평균
주당 부부 소득						
\$1200 이하	26.7	38.5	16.2	11.6	100.0	54.1
\$1200-\$1799	15.7	38.6	24.0	17.7	100.0	66.3
\$1800-\$1999	10.3	41.1	23.9	24.0	100.0	72.8
\$2000 이상	6.8	24.3	22.1	45.2	100.0	121.2
소계	10.8	27.4	19.0	27.2	100.0	93.4
주당 한부모 가족 소득						
\$600	32.0	35.4	24.3	6.4	100.0	44.6
\$600-\$999	22.7	27.7	24.9	21.3	100.0	71.2
\$1000 이상	4.6	26.7	19.2	36.5	100.0	111.0
소계	19.1	27.3	21.0	18.3	100.0	71.4
전체	12.4	27.4	19.3	25.5	100.0	89.1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Child Education and Care, June 2011.

요약 및 맺는 말

호주는 1970년 이후 보육정책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보육에 투자하는 비용 규모가 작은 국가의 하나이고, 우리나라, 일본과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보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가 인증하는 보육 서비스 질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 평가인증 제도의 모형이 되었다.

호주의 보육 서비스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부모들이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가정 내 보육도 지원하고, 다기능 원주민 보육시설 이동 서비스 등 소외된 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인프라인 종일제 보육시설은 공공기관이 1/3 정도이고 2/3이 민간시설인데, 특히 25% 정도는 영리회사의 체

인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공급 특성에 따라 호주의 보육 지원 정책은 부모보조금을 통하여 부모 보육비용을 감소시키고, 한편으로는 질적 수준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며, 이를 부모보조금과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육급여(CCB) 지원은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지원하는 시간에 차등을 두고, 또한 2004년부터 총 보육 비용의 30% 보육 환급 제도(CCR)를 도입하여 취업모를 추가로 지원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중 특히 취업모 중심의 정책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차별없이 종일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돌아보게 한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추구하는 보육시설 보육의 질 보장 체계 역시,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서문희(2007). **호주의 보육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호주 교육고용노사관계부(2009).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형성-호주 조기 학습 제도**.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une 2011.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Preschool Education, Australia, 2012.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3). Celebrating the International Year of Statistics 2013.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3). The NQF Snapshot Q2 2013.
- Australian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1995-2010). Australian Government Census of Child Care Service.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2012). DEEWR Budget Statements-outcomes and performance.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13). 2010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Censu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13). Annual Report 2012-13.

<http://acecqa.gov.au/national-quality-framework/assessment-and-ratings>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http://www.mychild.gov.au/pages/CCFactSheets.aspx>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jobs-education-and-training-child-care-fee-assistance>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http://www.childcare.com.au/goodstart-childcare-limited>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http://files.acecqa.gov.au/files/Newsletters/1-Issue13%20NewlettervFinal2.pdf>에서 2013년 11월 11일 인출

OECD(2006). Start Strong II.

OECD(2002). Country note: Australia.

서문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언론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언론학)
현재 유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혜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아동·가족학)
현재 유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3

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발행인 · 이영
발행처 · 유아정책연구소
편역 · 서문희 · 이혜민
발행일 · 2013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http://www.kicce.re.kr>
대표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대)

ISBN 978-89-97492-73-2 93330